

第 5013 號

1968 年 7 月 31 日

총 무 처 방 화

電話 直通 72-9818
交換 74-0011~19

官 報

1953 年 11 月 3 日

第 3 種 郵 便 物 認 可

대 한 공 문 사 인쇄 · 보급

電話 23-2150~9

一部 13 원 64 전

목 차

부 령

- 법무부령제 110호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와 소년원 및 그 본원의 수용기준에 관한 건 중 개정의 건)
- 보건사회부령제 228호 (식품의 제조·가공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 중 개정의 건)

훈 령

- 수산청훈령제 62호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제류순시 및 시찰승선 공무원 복무규정 제정)
- 원자력청훈령제 17호 (방사선농학연구소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정)

고 시

- 건설부고시제 453호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 건설부고시제 454호 (전남광주~송정간 고속화 도로건설사업 집행정지정)
- 건설부고시제 455호 (전남광주~송정간의 도시계획법 준용인가)
- 건설부고시제 456호 (전남광주~송정간 고속화 도로 실시 계획인가)
- 건설부고시제 457호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 설치 권리의 무양도양수 허가)
- 건설부고시제 462호 (공유수면점용 허가)
- 건설부고시제 463호 (공유수면 매립 공사 착수 기간 연장 허가)
- 건설부고시제 464호 (공유수면점용 기간 연장 허가)
- 건설부고시제 465호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 설치 기간 연장 허가)
- 건설부고시제 466호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 설치 기간 연장 허가)

공 고

- 교통부공고제 2,166호 (제 323회 임시 해기원 국가시험합격자 공고 중 불합격으로 정정 공고)
- 교통부공고제 2,168호 (제주지방해운국관내 추자각막여동포소등)
- 보건사회부공고제 66호 (외국인 간단체에 관한 등록취소)

광 고

- 공시최고, 실종선고들하기 위한 공시최고

부 령

◎法務部令第110號

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 및 그 支所와 少年院 및 그 分院의 收容基準에 관한 件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968 年 8 月 1 日

法務部長官 李 滌 園

다 음

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 및 그 支所와 少年院 및 그 分院의 收容基準에 관한 件中 改正의 件

別表 1 을 別紙와 같이 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別紙]

[別表 1]

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 및 그 支所의 收容基準 (單位:人)

機 關 別	收容基準人員
서울 拘置所	4,650
安養 矯導所	3,700
大田 矯導所	2,800
釜山 矯導所	2,800
大邱 矯導所	2,500
順天 矯導所	1,400
水原 矯導所	1,500
光州 矯導所	1,500
富川 矯導所	1,200
全州 矯導所	1,100
仁川少年矯導所	1,100
清州 矯導所	850
馬山 矯導所	900
議政府 矯導所	800
木浦 矯導所	1,000
春川 矯導所	900
金泉少年矯導所	750
安東 矯導所	650
晉州 矯導所	650
公州 矯導所	600
群山 矯導所	600
光州矯導所 小鹿島支所	50

◎保健社會部令第228號

食品의 製造·加工 등의 基準 및 規格에 관한 規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968 年 7 月 29 日

保健社會部 長 官 鄭 熙 燮 團

다 음

食品의 製造·加工등의 基準 및 規格에 관한 規程中改正의 件

別表中 第 1. 食品一般 4. 有害物質에 대한 試驗方法과 메칠알코올 (후크신亞黃酸法) (2) 試驗中 “메칠알코올 比色標準液表”를 削除하고, (3) 定量試驗中 “메칠알코올 標準溶液”을 “메칠알코올 比色標準液”으로, “上記表”를 “다음表”로, “定한다”를 “求한다”로 하며, “메칠알코올 比色標準液表”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메칠알코올 比色標準液表

混合率 番號	0.1% 메 칠알코올 (ml)	95% 메 칠알코올 (ml)	물 (ml)	檢液 1ml 中에 含有된 메칠알 코올의 mg
1	0.05	0.25	4.70	0.01
2	0.10	0.25	4.65	0.02
3	0.15	0.25	4.60	0.03
4	0.20	0.25	4.55	0.04
5	0.30	0.25	4.45	0.06
6	0.40	0.25	4.35	0.08
7	0.50	0.25	4.25	0.10
8	0.60	0.25	4.15	0.12
9	0.75	0.25	4.00	0.15
10	1.00	0.25	3.75	0.20
11	1.25	0.25	3.50	0.25
12	1.50	0.25	3.25	0.30
13	1.75	0.25	3.00	0.35
14	2.00	0.25	2.75	0.40
15	2.50	0.25	2.25	0.50

이 表中 檢液 1ml 中에 含有된 메칠알코올의 mg 量을 4배한것이 試料 1ml 中에 含有된 메칠알코올의 mg 量에 해당한다.

別表中 第 2 各則의 1, 間章中 “가. 規格基準”을 “가. 規格”으로 하고 第 2 各則에 “2. 清涼飲料水” 내지 “6. 食醋”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 清涼飲料水

清涼飲料水라 함은 遊離炭酸 또는 有機酸을 含有하는 飲料水를 말한다.

가. 規格

(1) 混濁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原料로서 쓰여지는 植物 및 動物의 組織成分 또는 着香의 目的으로 使用되는 添加物 및 그 比重調製에 起因하는 混濁은 除外한다.

(2) 沈澱物 또는 固形의 異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原料로서 쓰여지는 植物 및

動物의 組織成分 또는 着香의 目的으로 使用되는 添加物에 起因하는 沈澱物은 除外한다.

(3) 砒素·납·기타 重金屬이 檢出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容器包裝에서 由來하는 錫으로서 그 含有量이 150ppm 이하 일 때는 예외로 한다. 그 試驗方法은 나. 試驗方法의 (1)에 따라 한다.

(4) 大腸菌群이 陰性이어야 하며 細菌數는 그 1ml 中 100이하 이어야 한다.

그 試驗은 나, 試驗方法의 (2) 및 (3)에 따라 한다.

나. 試驗方法

(1) 砒素·납 기타 重金屬의 試驗法

① 檢體의 採取 및 試料의 調製

檢體 250g (稀釋하여 飲用하는 清涼飲料水에 있어서는 飲用時 稀釋하는 倍數의 值로서 250g을 나눈 量)을 取하여 水浴上에서 加溫蒸發濃縮하여 시럽狀으로 한다.

이를 물 10~20ml 로서 分解 후라스크에 옮기고 黃酸 20ml 및 窒酸 25ml 를 加하여 溶解시킨 후 加熱하면서 窒酸 1~2ml 를 매때로 補充하여 液이 거의 無色 또는 淡黃色으로 될 때까지 加熱을 계속하다가 일단 식히고 물 75ml 및 飽和蓆酸암모늄溶液 25ml 를 加하여 후라스크의 頸部에 白霧가 나타날 때까지 加熱한다.

冷却시킨후 물로서 후라스크의 液을 비이커에 씻어 넣어 全量을 100ml 로 하여 試料로 한다.

② 砒素의 試驗法

試料 4ml 를 取하여 食品添加物의 製造·加工·使用에 관한 基準과 그 成分의 規格에 관한 規程중의 4. 一般試驗法의 (4) 砒素試驗法에 따라 試驗할 때 나타나는 色은 標準色보다 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때 標準色은 砒素標準溶液 2ml 를 取하여 試料의 경우와 같이 操作하여 만든다.

③ 납·기타 重金屬의 試驗法

試料 60ml 를 蒸發접시에 取하여 水浴上에서 加溫하여 大部分의 水分을 蒸發시

킨 후 直火上에서 注意하여 乾固시킨다. 이를 계속하여 火力을 强하게 하면서 約 500°C로 加熱하여 灰化시킨다. 蒸發 접시의 內容物에 炭素가 殘存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黃酸으로 적시어 다시 加熱하여 거의 白色의 灰分이 될 때까지 이 操作을 되풀이 한 후 鹽酸 5 ml를 加하여 水浴上에서 乾固시킨다. 이 殘留物에 鹽酸 2ml 및 물 50ml를 加하여 水浴上에서 加溫하여 녹이고 必要하면 濾過하여 이것을 試驗溶液으로 한다. 다만 (가)의 試驗에 쓰이는 試驗溶液은 濾過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가) 試驗溶液 10ml를 取하여 硫化나트륨溶液 2滴을 加할 때 橙赤色의 混濁 또는 沈澱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또한 橙赤色 이외의 混濁 또는 沈澱이 생겼을 때에는 이것을 遠心分離한 후 沈澱에 물을 加하여 다시 遠心分離에 의하여 水洗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沈澱에 鹽酸에 25ml를 加하여 녹인다. 여기에 다시 黃酸 0.25ml를 加하여 白霧가 생길때 까지 加熱하고 식힌다. 冷却 후 물 0.75ml를 加하고 이 液 5滴을 試驗管에 取하여 요오드칼륨溶液 1滴을 加한다.

다음에 벤젠 1ml를 加하여 强하게 흔들어 섞은후 벤젠層을 피펫트로 滴板에 取하고 여기에 0.2%로 다민 B 溶液 1滴을 加하였을 때 벤젠層이 紫色을 나타내어서는 아니된다.

따로 위와같은 方法으로 空試驗을 한다.

(나) 試驗溶液 10ml를 取하여 50ml의 共椀 씨린다에 넣고 여기에 定性用암모니아, 砒安化칼륨溶液 30ml 및 定性用디티존 溶液 6ml를 加하여 强하게 흔들어 섞을 때 液의 下層이 紅色을 나타내서는 아니된다.

㉠ 定性用 암모니아 砒安化칼륨溶液
 砒安化칼륨 5g 亞黃酸나트륨 1.5g 및 枸橼酸암모늄 8g을 물에 녹여 20ml로 하여 치물블루 試液 數滴을 加하고 암모니아試液으로 弱알칼리性으로

로 한 후 抽出用 디티존 溶液을 써서 脫鉛될 때까지 每回 10ml씩으로 흔들어 섞고 클로르호름 10ml씩으로 2回 씩어 濾過한다. 濾液에 물 200ml 및 强암모니아 試液 780ml를 加한다.

㉡ 定性用 디티존 溶液
 디티존 0.5mg을 클로르호름 100ml에 녹여 冷暗所에 保存한다.

㉢ 抽出用 디티존 溶液
 디티존 5mg을 클로르호름 100ml에 녹여 冷暗所에 保存한다. 使用할 때 必要量을 取하여 그 約 1/2 容量의 1% 窒酸을 加하여 흔들어 섞은 후 水層을 除去하고 쓴다.

㉣ 치물블루 試液
 치물블루 0.1g을 알코올 100ml에 녹이고 必要에 따라 濾過한다.

(다) 試驗溶液 10ml에 過剩의 암모니아 試液을 加하여 濾過할 때 濾液이 靑色을 나타내서는 아니된다.

(라) 試驗溶液 5ml에 물을 加하여 1ml로 하고 이에 鹽酸 0.5ml를 加하고 다시 還元鐵 0.1g을 加하고 5分間 놓아둔 다음 濾過한 液에 鹽化第 2 水銀試液 2滴을 加할 때 白色 또는 灰白色의 沈澱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마) 試驗溶液 5ml에 窒酸 1ml를 加하여 잠시 끓인 후 암모니아 試液으로 弱알칼리性으로 한다. 이것을 濾過한 液에 물을 加하여 10ml로 하고 이에 硫化나트륨試液 2滴을 加할 때 白色의 混濁 또는 沈澱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④ 錫의 定量法

試料 30ml를 取하여 암모니아試液으로 微알칼리性으로 하고 이에 물을 加하여 400ml로 한다. 이것을 비이카에 넣어 鹽酸 20ml 加하고 비이카에 덮개를 하여 水浴중에서 約 95°C로 加溫하면서 1時間동안 硫化水素를 充分히 通한 다음 다시 約 95°C로 1時間 加溫한 후 30分間 放置한다. 濾取한 沈澱을 冷水 및

熱湯으로 번갈아 3회 씻고 沈澱을 濾紙와 같이 비이커에 옮겨 多硫化 암모늄溶液 20ml를 加하고 끓인후 濾過한다. 다시 비이커의 內容物에 少量의 多硫化 암모늄溶液을 加하고 끓인 후 濾過하는 操作을 2회 되풀이 한 후 濾紙를 熱湯으로 씻고 洗液을 濾液에 合하여 5% 醋酸으로 酸性으로 하고 水浴중에서 1時間 加溫한 후 하룻밤 放置하고 定量分析用 濾紙를 二重으로 하여 濾過한다. 沈澱을 冷水 및 熱湯으로 번갈아 가며 각각 2회 씻고 沈澱을 濾紙와 같이 重量既知의 磁製도가니에 옮기어 完全히 乾燥한후 처음에는 弱하게 加熱하고 다음에 받침 마개를 닫고 強熱한다.

冷 후 SnO₂로서 秤量한다.
錫의量=SnO₂의 量×0.7877

多硫化암모늄溶液

硫水 또는 水水로 冷却하면서 암모니아試液 200ml에 硫化水素를 더 吸收하지 아니 할 때까지 通한다.

다음에 암모니아試液 20ml 및 蒸溜水를 加하여 1,000ml로 한다. 이 液에 昇華硫黃 25g을 加하여 數時間 放置한후 濾過한다.

(2) 大腸菌群 試驗法

① 檢體의 採取 및 試料의 調製

檢體를 容器包裝한대로 採取하여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그 外部를 流水로 씻고 乾燥시킨 다음 試驗部位를 中心으로 70% 알코올綿으로 닦고, 滅菌한 器具를 써서 開封開栓 또는 開罐하여 그 液의 10ml 및 1ml 또는 10倍液 1ml를 取하여 이것을 試料로 한다.

炭酸을 含有하는 清涼飲料水에 있어서는 다른 滅菌한 容器에 옮기고 저어 섞어서 2酸化炭素를 發散시킨후 試料를 만든다.

② 試驗

(가) 推定試驗

原液의 10ml 및 1ml 또는 10倍液 각 1ml를 試料로하여 각각 醱酵管에 넣는다. 醱酵管은 다아람管 또는 스미스管으로 하고 이것에 加하는 부이용은

B.T.B 加乳糖부이용으로 하며, 이것은 적어도 試料量의 2배가 될 수 있는 濃度로 調製한다. 醱酵管은 35~37°C로 24時間 (前後 2時間의 餘裕를 인정한다) 培養한 후 氣發生이 없을 때에는 다시 培養을 계속하여 48時間 (前後 3時間의 餘裕를 인정한다) 까지 觀察한다.

이 경우 氣發生이 없을 때에는 推定試驗陰性이고 氣發生이 있을 때에는 推定試驗陽性(大腸菌群疑陽性)이다.

(나) 確定試驗

推定試驗陽性인 때에 이 試驗을 한다. 遠藤培養基, E.M.B 培養基 또는 B.G.L.B 醱酵管을 쓴다.

推定試驗에서 氣를 發生한 醱酵管을 取하되 氣發生 醱酵管이 많을 때에는 그 중에서 最大稀釋倍數의 것을 取하여 이것의 1白金耳를 遠藤培養基 또는 E.M.B 培養基에 劃線培養하여 獨立한 集落을 發生시키든가 또는 B.G.L.B 醱酵管에 移植하여 培養한다. 24時間후 遠藤培養基 또는 E.M.B 培養基에 있어서 定型的인 集落發生이 있으면 確定試驗陽性(大腸菌群陽性)으로 하며 非定型的의 集落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完全試驗을 한다.

B.G.L.B 醱酵管에서 48時間이내에 氣發生이 있으면 確定試驗陽性(大腸菌群陽性)으로 한다. 다만, 培地의 色이 褐色으로 되었을 때에는 完全試驗을 한다.

(다) 完全試驗

確定試驗에서 B.G.L.B 醱酵管을 使用한 것은 따로 遠藤培養基 또는 E.M.B 培養基에 옮기어 다음의 操作을 한다.

遠藤培養基 또는 E.M.B培養基에서 定型的大腸菌群集落 또는 그이상의 非定型的 集落을 取하여 각각 乳糖부이용 醱酵管 및 寒天斜面에 移植한다.

培養時間은 48時間 (前後 3時間의 餘裕를 인정한다) 으로 하고 氣發生을 確認한 것으로서 寒天斜面에 培養한것

에 있어서는 그람染色을 하여 鏡檢한다.

乳糖부이용 醱酵管에서 개스를 發生하고 寒天斜面の 集落의 菌이 그람陰性 無芽胞의 桿菌일 때에는 完全試驗性(大腸菌群陽性)으로 한다.

㉑ 乳糖부이용 醱酵管

普通부이용(肉에기스 5g, 펠톤 10g, 물 1,000ml, PH 6.4~7.0)에 乳糖을 0.5%의 比率로 加하여 醱酵管에 分注하여 高壓滅菌하고 천천히 식힌다. 간헐滅菌法을 採用하여도 좋다.

㉒ 遠藤培養基

3%의 普通寒天(PH 7.4~7.8)을 加溫 溶解하고 이것의 1,000ml에 少量의 蒸溜水에 녹인 乳糖 15g을 加하여 잘 섞는다. 이에 후크신의 알코올飽和溶液 (95% 알코올100ml에 후크신 11g을 녹인 것) 10ml를 加하여 冷却하고 約 50°C에 달하였을 때 새로 만든 10% 亞黃酸나트륨溶液을 少量씩 加하여 후크신의 색이 淡黃色으로 되었을 때 滴加를 그친다.

이것을 大型試驗管에 40~100ml씩 分注하고 100°C에서 30分間 滅菌하여 使用할 때 加溫溶解하여 約 15ml씩 平板으로 한다.

㉓ E.M.B 培養基

펠톤 10g, 第2磷酸칼륨 2g, 寒天 25~30g을 蒸溜水 1,000ml에 加熱溶解하여 끓인 후 蒸發量을 補正한다. 이에 乳糖 10g 2%에 오신溶液 20ml 및 0.5% 메칠렌블루溶液 13ml를 加하여 混和하고 分注한 후 間헐滅菌한다. 使用할 때 約 15ml씩 平板으로 한다.

㉔ B.G.L.B 醱酵管

펠톤 10g 및 乳糖 10g을 蒸溜水 500ml에 녹이고 이에 新鮮牛膽汁 200ml (또는 乾燥牛膽末 20g을 물 20ml에 녹인 것으로서 PH 7.0~7.5의 것)을 加하고 따로 蒸溜水를 加하여

約 975ml로 하여 PH7.4로 補正하고 이에 0.1% 브릴리안트그린溶液 13.3ml를 加하여 全量을 1,000ml로 하여 綿濾過하고 醱酵管에 分注하여 間헐滅菌한다. 이의 PH는 7.1~7.4로 한다.

(3) 細菌數(生菌數)測定法

① 檢體의 採取 및 試料의 調製

檢體를 容器包裝한대로 採取하여 그 外部를 流水로 씻고 乾燥시킨 다음 마개 및 그 부근을 70% 알코올綿으로 닦고 滅菌한 器具를 써서 開封, 開栓 또는 開罐하여 즉시 內容物을 다른 滅菌容器에 옮기고 잘 저어섞은 후 滅菌피펫으로 그 1ml 및 10배, 100배 1ml를 取한다. 炭酸을 含有한 清涼飲料水에 있어서는 다른 滅菌한 容器에 옮기고 저어섞어서 2酸化炭素를 發散시킨 후 試料를 取한다.

② 試驗

滅菌 페트리접시 2枚에 試料 各 1ml씩을 正確히 取하고 이에 미리 加溫溶解하여 43~45°C로 維持한 標準寒天培養基 約 15ml를 加하여 조용히 회전하고 前後左右로 기울여 混和하여 冷却凝固시킨다. 이 操作은 試料를 페트리접시에 取한 후 20分 이내에 完了하여야 한다. 培養基가 凝固하면 倒置하여 35~37°C의 溫度에서 48時間(前後 3時間의 餘裕를 인정한다.) 培養하여 菌數를 算定한다. 이때에 滅菌蒸溜水 1ml를 對照液으로 하여 위와 같이 操作해서 페트리접시 및 培養基가 無菌이었으며 操作이 完全하였는가를 確認하여야 한다.

3. 粉末清涼飲料

粉末清涼飲料라 함은 飲用하기 위하여 물에 녹였을 때 遊離炭酸 또는 有機酸을 含有하는 粉末飲料를 말한다.

가. 規格

(1) 飲用時 使用되는 倍數의 물에 녹인 液이 清涼飲料水의 가. 規格의 (1) 및 (2)에 適合하여야 한다.

(2) 砒素, 납 기타의 重金屬이 檢出되어서는 아니된다.

그 試驗은 나. 試驗方法 5 (1)에 따라 한

다.

(3) 乳酸菌을 加하지 않은 粉末清涼飲料에 있어서는 大腸菌群이 陰性이며 細菌數가 檢體 1g에 대하여 3,000이하 이어야 한다. 그 試驗은 나. 試驗方法의 (2) 및 (3)에 따라 한다.

(4) 乳酸菌을 加한 粉末清涼飲料에 있어서는 大腸菌群이 陰性이며 細菌數(乳酸菌을 除外한다)가 檢體 1g에 대하여 3,000이하이어야 한다. 그 試驗은 나. 試驗方法의 (4)에 따라 한다.

나. 試驗方法

(1) 砒素·납 기타 重金屬의 試驗法

① 檢體의 採取 및 試料의 調製

飲用時 使用되는 물의 倍數로서 250g을 나눈 量의 檢體를 取하여 이를 分解 후 라스크에 옮기고 물 50ml를 加하여 녹인 후 窒酸 20ml 및 黃酸 10~20ml를 加하여 때때로 窒酸 1~2ml를 補充하면서 液이 거의 無色 또는 淡黃色이 될 때까지 加熱을 계속한다.

일단 식히고 물 75ml 및 飽和磷酸 암모늄溶液 25ml를 加하여 후라스크의 頸部에 白霧가 나타날 때까지 加熱한다.

冷却 후 물로 후라스크의 液을 비이커에 씻어 넣어 全量을 100ml로 하고 이것을 試料로 하여 清涼飲料水의 나. 試驗方法 (1)의 ② 砒素의 試料法 및 ③ 납, 기타 重金屬의 試驗法에 따라 試驗한다.

(2) 大腸菌群 試驗法

① 檢體의 採取 및 試料의 調製

容器包裝의 表面을 70% 알코올 綿으로 닦고 滅菌한 器具를 써서 開封하여 그 內容중 10g을 無菌的으로 滅菌試料瓶에 取하여 滅菌磷酸緩衝液을 加하여 100ml로 하고 密栓하여(發泡性的 것에 있어서는 잘 저어서 2酸化炭素를 發散시킨 후 密栓한다) 잘 흔들어 섞어 이것을 試料原液으로 한다.

② 試驗

試料原液 10ml 및 1ml 또는 10倍液 1ml를 取하여 이것을 試料로 하여 清涼飲料水의 成分規格의 (4)의 2 大腸菌群試驗

法에 따라 試驗한다.

(3) 細菌數(生菌數)의 測定法

試料原液·10倍液·100倍液 및 1,000倍液을 檢體로 하여 얼음의 成分規格의 (2)의 2. 細菌數(生菌數)의 測定法에 따라 測定한다.

(4) 大腸菌群試驗法 및 試料의 調製

① 檢體의 採取 및 試料의 調製

(2)의 ① 檢體의 採取 및 試料의 調製에 따라 操作한다.

② 大腸菌群試驗法

2의 (2) 大腸菌群試驗法에 따라 試驗한다.

③ 細菌數(生菌數, 다만 乳酸菌을 除外한다)의 測定法

(가) 試料 原液·10倍液 100倍液 및 1,000倍液의 각각에 대하여 滅菌페트리접시 2枚 이상을 準備하여 이에 각각의 檢液을 각 1ml씩 正確히 滅菌피펫트로 取하고 이에 加溫 溶解하여 43~45°C로 維持한 1.0μg/ml 페니실린 G 칼륨 添加葡萄糖加寒天培地 約 15ml를 加하여 조용히 回轉 또는 前後左右로 기울여서 混合하여 冷却 凝固시킨다. 檢液을 페트리접시에 取하여 培地에 注加할 때까지 20分 이상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培地가 凝固되면 이것을 倒置하여 孵卵器에 넣는다. 이 경우 檢液을 加하지 않고 稀釋用液 1ml와 培地를 混合한 것을 對照로 하여 페트리접시, 稀釋用液 및 培地가 無菌이었으며 操作이 完全하였는지의 與否 및 檢液과 페니실린 G 칼륨을 添加하지 않은 葡萄糖 加寒天培地와를 混合한 것을 對照로 하여 乳酸菌이 1.0μg/ml의 페니실린 G 칼륨으로 完全히 發育抑制되었는가를 確認하여야 한다.

페트리접시는 直徑 9~10cm, 깊이 1.5cm의 것을 쓴다.

培養溫度는 37°C(上下 2°C의 餘裕를 인정한다)로 하고 培養時間은 24時間(그 前後 3時間의 餘裕를 인정한다)으로 한다.

페니실린 G 칼륨 添加葡萄糖加寒天培地; 葡萄糖 5~10g을 少量의 물에 녹이고

이에 加溫溶解한 2.5~3.0%의 普通寒天培地를 注加 混合하여 分注한 후 121°C에서 15分間 滅菌한다.

페니실린 G 칼륨은 平板을 만들기 直前に 培地에 添加하여 混合하여야 한다.

(나) 試料原液·10倍液·100倍液 및 1,000倍液의 각각에 대하여 滅菌페트리접시를 2枚 이상 準備하여 이에 각각의 檢液을 각 1ml씩 正確히 滅菌피펫으로 取하고 이에 加溫溶解하여 43~45°C로 維持한 4% 鹽化나트륨含有 B.C.P 加프레이트카운트 寒天培地 約 15ml를 加하여 조용히 回轉시키며 前後左右로 기울여서 混合하고 冷却凝固시킨다. 檢液을 페트리접시에 取하여 培地에 注加할 때까지 20分 이상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培地가 凝固되면 이것을 倒置하여 37°C(上下 2°C의 餘裕를 인정한다)에서 24時間(그 前後 3時間의 餘裕를 인정한다)培養한다.

이 경우 檢液을 加하지 않고 稀釋用液 1ml와 培地를 混合한 것을 對照로 하여 페트리접시·稀釋用液 및 培地가 無菌이었으며 操作이 完全하였는가를 確認하여야 한다.

페트리접시는 直徑 9~10cm, 길이 1.5cm의 것으로 한다.

4% 鹽化나트륨含有 B.C.P 加프레이트카운트 寒天培地; 酵母엑기스 2.5g, 펄론 5g, 葡萄糖 1g, 鹽化나트륨 40g 및 粉末寒天 15g을 물 1,000ml에 加하여 加熱溶解하고 PH. 6.8~7.0으로 修正하고 이에 B.C.P. (브롬크레졸퍼어플)를 0.004~0.006%의 比率로 加하여 121°C에서 16分間 滅菌한다.

(다) (가)의 培養에 있어 算定한 細菌數와 (나)의 培養에 있어 算定한 細菌數를 合하여 求하고자 하는 細菌數로 한다.

細菌數의 算定方法은 (나)의 (3) 細菌數(生菌數)의 測定法에 의한다.

4. 아이스크림類

아이스크림類라 함은 液體食品을 固形 또는 氣泡를 含有한 半固形狀態로 凍結한 것으로서 乳脂肪分 3%未滿을 含有하거나 또는 含有하지 아니한 아이스크림(乳脂肪分 3%이상 含有한 것은 除外한다) 아이스케이크·아이스캔디·아이스샤벨·아이스밀크 등과 같은 食品을 말한다.

가. 規 格

(1) 乳脂肪分을 含有하지 아니한 아이스크림類에 있어서는 그 녹인물 1ml중의 細菌數가 3,000이하이어야 한다.

(2) 乳脂肪分을 含有하는 아이스크림類에 있어서는 그 녹인물 1ml중의 細菌數가 10,000이하이어야 한다.

(3) 大腸菌群이 陰性이어야 한다.

(4) 아이스크림類를 保存할 때에 使用하는 容器는 適當한 方法으로 殺菌한 것이어야 한다.

나. 試驗方法

아이스크림類의 細菌數 判定法 및 大腸菌群 試驗法은 다음과 같다.

(1) 檢體의 採取 및 試料의 調製

檢體는 製品이 成分規格에 適合한지의 與否를 判斷할 수 있을 만큼의 數量을 滅菌採取器具를 써서 無菌的으로 滅菌採取瓶에 取하여 될 수 있는대로 그 溫度를 維持하거나 또는 運搬하여 採取 후 4時間 이내에 試驗에 써야 한다.

試料는, 檢體를 40°C이하에서 될 수 있는대로 短時間에 全部 녹여 그 10ml를 共栓瓶에 取한 것에, 細菌數(生菌數)의 測定에 있어서는 滅菌生理食鹽水 90ml를 加하여 10倍 稀釋한 것을 한 平板에 30~300의 集落을 얻을 수 있도록 滅菌生理食鹽水로 段階稀釋한 것을, 大腸菌群의 試驗에 있어서는 滅菌生理食鹽水 90ml를 加하여 10倍稀釋한 것으로 한다.

(2) 細菌數(生菌數)의 測定法

각 試料에 대하여 滅菌페트리접시 2枚 이상을 準備하고 滅菌피펫을 써서 滅菌페트리접시에 當該試料 1ml씩을 正確히 取하여 이에 미리 加溫하여 녹여 43~45°C로 維持한 標準寒天培養基 約 7ml로 加하여 조용히 廻轉하고(乳脂肪分을 含有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葡萄糖加寒天培養基를 쓴다)

前後左右로 기울여서 混合하여 冷却凝固시킨다.

이 操作은 試料을 페트리접시에 取한 후 20分이내에 完了하여야 한다.

培養基가 凝固되면 倒置하여 35~37°C의 溫度에서 48時間(前後 3時間의 餘裕를 인정한다)培養한다.

이 경우 檢體의 稀釋에 쓴 滅菌生理食鹽水 1m/에 試料에 加한 培養基와 同一同量의 培養基를 加하여 조용히 廻轉하고 이 하 試料의 경우와 같이 操作하여 培養한 것을 對照로 하여 페트리접시·生理食鹽水 및 培養基가 無菌이었으며 操作이 完全하였는가를 確認하여야 한다.

페트리접시는 直徑 9~10cm, 길이 1.5cm의 것으로 한다.

細菌數의 算定은 다음 要領에 의한다. 한 平板의 集落數가 30~300의 것(한 平板의 集落數가 30~300의 것이 없을 때에는 擴散集落의 部分이 平板의 2分の 1이하로서 他의 集落이 잘 分散되어 있어 算定에 支障이 없는 것)의 集落數를 集落計算器를 써서 일정한 光線아래서 計測하고 稀釋倍率 이 同一한 試料마다 각 平板의 集落數를 平均 値에 當該試料에 관계되는 稀釋倍率을 곱하여 얻은 數值를 加算하고, 有效하였던 平板의 稀釋倍率別에 의한 種類의 數로서 나눈 値를 細菌數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를 試驗室內 事故로 한다.

- ① 集落의 發生이 없을 때
- ② 擴散集落의 部分이 平板의 2分の 1을 넘을 때
- ③ 汚染되었음이 分明할 때
- ④ 기타 不適當하다고 인정될 때

標準寒天培養基; 肉エキ스 3g, 펠톤 5g, 葡萄糖 1g 및 寒天 25g을 蒸溜水 1,000m/에 加熱하여 녹이고 그 100分の 1容量의 脫脂乳를 加하여 PH6.6~7.0으로 修正한 후 濾過하여 高壓滅菌한다.

葡萄糖加寒天培養基; 葡萄糖 5~10g을 少量의 물에 녹이고 이에 加溫하여 녹인 2.5~3.0%의 普通寒天培養基를 加하여 混和하고 高壓滅菌한다.

(3) 大腸菌群의 試驗法

滅菌페트리접시 2枚를 準備하고 각각에 滅菌리벳트를 써서 試料 1m/를 正確히 取한다. 이에 미리 加溫하여 녹여 43~45°C로 維持한 데스옥시코오레이트寒天培養基 10~15m/를 加하고 조용히 廻轉하여 前後左右로 기울여서 混合하여 冷却凝固시킨다.

培養基가 凝固한 후 그 表面에 새로 同培養基 3~4m/를 加하여 冷却凝固시킨다.

이 操作은 試料을 페트리접시에 取한 후 20分이내에 完了하여야 한다.

培養基가 凝固되면 倒置하여 35~37°C에서 20時間(前後 2時間의 餘裕를 인정한다) 培養하여 集落의 有無를 본다.

暗赤色의 集落을 確認한 것은 推定試驗 陽性으로 하고 該當되지 않은 것은 推定試驗 陰性으로 한다.

推定試驗 陽性인 경우에는 當該 集落의 代表的인 것을 E.M.B 培養基에 塗抹하고 35~37°C에서 24時間(前後 2時間의 餘裕를 인정한다) 培養한 후 大腸菌群의 定型的 集落(定型的集落이 없을 때에는 定型的 集落到 類似한 集落 2이상)을 取하여 乳糖부이용醱酵管 및 寒天斜면에 각각 移植한다.

(定型的 集落到 類似한 集落을 取하였을 때에는 각 集落에서 取한 것 別로 각각 移植한다) 乳糖부이용醱酵管은 35~37°C에서 48時間(前後 3時間의 餘裕를 인정한다), 寒天斜면은 35~37°C에서 24時間 培養하여 乳糖부이용醱酵管에서 개쓰 發生을 確認한 경우에 이것과 相對되는 寒天斜면培養에 對하여 鏡檢하고 그람 陰性無芽胞桿菌을 確認한 경우를 大腸菌群 陽性으로 한다.

페트리접시는 直徑 9~10cm, 길이 1.5cm의 것으로 한다.

데스옥시코오레이트寒天培養基; 펠톤 10g, 寒天 15~25g, 乳糖 10g, 食鹽 5g, 枸櫞酸鐵암모늄 2g 및 第1磷酸칼륨 2g을 물 1,000m/에 加熱하여 녹이고 이를 濾過한 濾液을 PH7.3~7.5로 修正하여 이에 데스옥시코오트酸 8g을 1g 및 뉴트랄레드 33mg을 加하여 다시 PH7.3~7.5로 修正한다.

5. 일음-일음이라함은 食用에 供하기 위하여 飲料水를 얼려서 固體로 한 것을 말한다.

가. 規格

- (1) 얼음의 녹인물은 無色透明하며 냄새와 맛이 없고 挾雜物이 있어도 極微量으로서 그 鹽素이온 量은 30.0ppm 이하, 窒酸이온 量은 1.0ppm 이하, 암모니아量은 0.05ppm 이하 亞窒酸量은 痕跡 이하이며 過망간酸 칼류의 消費量은 얼음의 녹인물 100萬分에 대하여 10分 이하 이어야 한다.
- (2) 얼음은 녹인물 1m/중의 細菌數가 100이하이어야 하며, 大腸菌群은 그 50m/에서 檢出되지 않아야 한다.

나. 試驗方法

1. 理化學的 試驗

(1) 檢體의 採取 및 試料의 調製

얼음의 不透明部의 下端을 中心으로 하여 두께 12~14cm의 部分을 끊고 이를 다시 縱橫으로 끊어 4等分하여 그중의 하나를 檢體로 하여 깨끗한 물로서 잘 씻은 후 얼음 融解器안에 넣고 放置하여 처음의 녹인물 約 200~300m/를 버리고 남은 얼음을 다시 放置하여 全部 녹여 그 녹인물을 흔들어 섞은 다음 靜置하여 試料로 한다.

(2) 鹽素이온

試料 200m/를 비이커에 取하여 約 $\frac{1}{5}$ 容量까지 증발농축하고 冷後 크롬酸 칼류 試液(10w/v%) 3滴을 加하여 0.01N 窒酸銀液으로서 微類褐色을 나타낼때까지 滴定한다.

滴定の 終末點은 물 40m/에 크롬酸칼류 試液 3滴을 加한 것의 色과 比較하여 判定한다.

滴定에 所要된 窒酸銀液의 m/數(a)로 부터 다음式에 따라 鹽素이온의 ppm을 求한다.

$$\text{鹽素이온}(\text{Cl}^- \text{ppm}) = 0.3545a \times \frac{1,000}{\text{試料}(m/)}$$

(3) 窒酸이온

(가) 試藥

부루신 溶液: 부루신($\text{C}_{23}\text{H}_{26}\text{O}_4\text{N}_2 \cdot 4\text{H}_2\text{O}$) 1g을 水醋酸에 녹여서 20m/로 한다. 이 溶液은 褐色병에 넣어 密栓하여 保存하면 約 1個月間 安定한다.

黃酸: 물 1容量에 黃酸 1容量을 조용히 加하여 磁製접시에 넣고 격렬히 白煙

을 發生할때까지 加熱농축한 다음 冷後물을 加하여 比重을 1.79~1.82로 調整한다. (約 85~90%) 窒酸性窒素標準溶液: 미리 105~110°C에서 約 4時間乾燥한 窒酸칼류(KNO_3) 0.7218g을 달아 물에 녹여서 全量을 1,000m/로 하여 原液으로 한다. 原液 10m/에 물을 加해서 1,000m/로 하여 標準溶液으로 한다. 窒酸性 窒素標準溶液 1m/=0.00(mgN clppm)

(나) 試驗

① 鹽素이온 150ppm이하 亞窒酸性窒素 0.02~0.03ppm이하일 때 試料 2m/와 窒酸性窒素標準溶液 2m/를 각각 試驗管에 取하고 黃酸 60m/를 조용히 加하여 잘 섞고 冷後 부루신 溶液 0.1m/를 加하여 比色한다. 必要하면 이를 다시 75±2°C의 水浴중에서 15分間 加溫한 후 그 呈色度를 比較한다.

② 鹽素이온 150ppm이하, 亞窒酸性窒素 0.02~0.03ppm 이상을 含有할 때 試料 25m/에 黃酸 0.3m/ 및 0.01N 過망간酸칼류液 2.5m/를 加하여 끓을 때까지 加熱한다. (過망간 酸칼류의 紫紅色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追加한다.) 다음 피펫트를 써서 0.01N 蓆酸나트륨液을 滴加하여 脫色시키고 冷後 共栓메쓰찌린다에 옮겨 蒸溜水를 加하여 一定量으로 해서 試驗溶液으로 한다.

따로 窒酸性窒素標準溶液 25m/에 蒸溜水를 加하여 위의 一定量과 같게 하고 兩液에서 각각 2m/를 取하여 이하 ①의 方法에 따라 處理하고 比色한다.

(4) 암모니아

(가) 試藥

룻벨鹽溶液: 酒石酸칼류나트륨 50g을 물 100m/에 녹이고 濾過한 후 네슬러 試液 5m/를 加한다. 이 溶液은 갈색병에 保存하며 그 上澄液을 9는다.

암모니아性窒素標準溶液: 鹽化암모늄 (NH_4Cl) 0.3819g을 달아 물에 녹여 全

량을 1,000ml로 하여 原液으로 한다.
 原液 10ml에 물을 加하여 1,000ml로
 해서 이를 標準溶液으로 한다.
 암모니아性窒素標準溶液 1ml=0.001mgN
 네슬러試液: 요오드水銀 100g을 물 50
 ~70ml와 같이 乳鉢중에서 잘 갈아서
 고 이에 요오드나트륨 45g을 加하여
 될 수 있는데 까지 녹인 후 이에 水
 酸化나트륨 200g을 물 約 900ml에 녹
 인 液을 천천히 加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다시 물을 加하여 1,000ml로 한
 다. 이 試藥은 갈색병에 넣고 密栓하
 여 保存하며 그 上澄液을 쓴다.

(나) 試驗

試料 50ml와 암모니아 性窒素標準溶液
 25ml에 蒸溜水를 加하여 50ml로 한
 것(0.05ppm)을 각각 同型比色管에 取
 하고 각 管에 靑鹽溶液 2ml 및 네
 슬러試液 1ml씩을 加하여 混和한후 兩
 液의 呈色度를 比較한다.

(5) 亞窒酸

(가) 試藥

GR(Griess~Romijn) 亞窒酸試藥 미리
 乳鉢 中에서 粉末로한 酒石酸 89g에
 α -나무칠아민 1g 및 설파닐酸 10g을
 均等히 混和하고 廣口의 褐色瓶에 넣
 어 密栓하여 保存한다.

(나) 試驗

試料 50ml를 比色管에 取하고 이에
 GR 亞窒酸試藥 約 0.3g을 加하여 섞
 어서 10分間 靜置한다. 이 때 亞窒酸
 性窒素가 存在하면 桃~紫紅色을 나타
 낸다.

(6) 過망간 酸칼륨消費量

(가) 試藥

稀黃酸: 물 2容量에 黃酸 1容量을 加하
 여 水浴上에서 加溫하면서 0.01N 過
 망간酸칼륨液을 微紅色이 消失되지 않
 고 殘留할 때까지 滴加한다.

(나) 試驗

試料 100ml를 沸騰石 數粒을 넣은 깨
 껍질 三角후라스크에 넣고 이에 稀黃
 酸 5ml를 加한 후 다시 0.01N 過망
 간酸칼륨液 10ml를 정확히 加하여 石

綿金網上에서 加熱, 5分間 끓인 다음 즉
 시 0.01N 稀酸나트륨液 10.0ml를 加하
 여 脫色시키고 즉시 0.01N 過망간酸
 칼륨液으로서 微紅色이 消失되지 않을
 때까지 15秒間이상 持續) 滴定한다.

前後에 소비된 0.01N 過망간酸칼륨液
 의 合計 6ml를 求하고 다음式에 따
 라 過망간酸칼륨 소비량을 算出한다.
 過망간酸칼륨消費量(KMnO₄ppm)=0.316

$$(bF - 10) \times \frac{1000}{\text{試料 ml}}$$

F: 0.01N 過망간酸칼륨液의 力價

위의 試驗에서 試料에 0.01N 過망간
 酸칼륨液 10ml를 加하고 5分間 끓일
 때에 紫紅色이 消失될 경우에는 過망
 간酸칼륨의 量의 不足을 意味하므로 새
 로 적당한量의 試料를 蒸溜水로 稀釋
 하여 다시 試驗한다.

2. 細菌數의 測定 및 大腸菌群 試驗法

(1) 試料의 調製

가. 試驗方法의 1의 (1)에서 얻은 檢體
 를 滅菌蒸溜水로 잘 씻고 滅菌한 容器
 에 넣어 室溫 또는 40°C. 이하의 溫湯
 中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全部 녹인 후
 즉시 이 녹인물의 原液·10倍液·100倍液
 및 1,000倍液을 만든다.

(2) 細菌數(生菌數)의 測定法

檢査하고자 하는 原液·10倍液·100倍液
 및 1,000倍液의 각각에 대하여 滅菌페트
 리 접시를 2枚 이상 準備하고 이에 각
 각의 檢液을 각 1ml씩 正確히 滅菌피펫
 트로 取하고 이에 加溫溶解하여 43~45°C
 로 維持한 葡萄糖加寒天培養基 約 15ml
 를 加하여 조용히 廻轉시키고 前後左右
 로 기울여서 混合하여 冷却 凝固시킨다.
 檢液을 페트리접시에 取하여 培養基를 注
 加할 때까지 20分 이상 경과하여서는 아
 니된다. 培養基가 凝固되면 이것을 倒置
 하여 孵卵器에 넣는다. 이 경우 檢液을
 加하지 않고 稀釋用液 1ml와 培養基를
 混合한 것을 對照로 하여 페트리접시 稀
 釋用液 및 培養基가 無菌이었는 10 操作
 이 完全 하는가를 確認하여야 한다.
 페트리접시는 直徑 9~10cm, 깊이 1.5cm

의 것으로 한다.

葡萄糖加寒天培養基 :

葡萄糖 5~10g을 少量의 물에 녹인 것에 加溫溶解한 2.5~3.0%의 普通寒天培養基를 壓加하고 混和하여 分注한 후 高壓滅菌한다.

培養溫度는 37°C(上下 2°C의 餘裕를 인정한다)로 하고 培養時間은 24時間(그 前後 3時間의 餘裕를 인정한다)으로 한다. 孵卵器에서 乾집어 낸 培養基는 가능한 限 人工光線 아래서 低倍率(15倍)의 擴大鏡을 써서 發生한 細菌集落數를 算定한다. 培養時間을 경과한 후 즉시 算定할 수 없는 경우에는 5°C의 冷藏庫에 保存하여 24時間 이내 算定하여야 된다. 細菌數의 算定은 다음 要領에 의한다.

(가) 1平板內의 集落數가 30~300일 때 각 原液 및 倍率稀釋의 可檢物의 平板중 集落數가 30~300의 것을 取하여 計測한다.

(나) 全平板의 集落數가 300이상일 때 모든 稀釋檢液의 集落數가 300이상일 때에는 그 稀釋倍率이 가장 큰 것에 대하여 後述의 密集集落平板測定法에 따라 細菌數를 計測한다.

(다) 全平板의 集落數가 30 이하일 때 모든 平板에 30 이하의 集落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그중 가장 稀釋倍率이 적은 것을 計測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算定數에 "이하"란 文字를 붙이지 않으면 아니된다.

(라) 擴散集落이 있을 때 골라낸 平板에 擴散集落이 있을 때에는 다음 條件의 것에 限하여 그것에 相當한 部分을 計測한다.

① 다른 集落이 잘 分散되어있어 擴散集落이 있어도 計測에 支障이 없는 것

② 擴散集落의 部分이 平板의 1/2 이하 일때

(마) 試驗室內事故

다음과 같은 특수한 事故에 대하여는 試驗室內事故(L.A)로 한다.

① 集落이 發生하지 않았을 때

② 擴散集落의 部分이 平板의 1/2을 넘을 때

③ 汚染되었음이 分明할 때

④ 기타 不適當하다고 인정된 때

(바) 算出法

細菌數는 어느 경우든지 計測에 有效한 2枚 이상의 集落數의 算術平均에 稀釋倍率을 곱한 것으로 한다. 이 數値는 上位의 2位의 數를 有效數字로 하여 略算한다.

(사) 密集集落平板測定法

한 平板上의 集落數가 300을 조금 넘고 있을 때에는 그 平板의 一部分의 集落數를 正確히 1cm²의 區劃이 있는 計算板을 써서 다음의 要領에 따라 計測하고 그에 따라 平板全面의 集落數를 算出한다.

① 1cm²에 集落數가 10이하 있을 때에는 集落計測板의 中心을 通過하여 直交하는 2直徑을 만들어 그 中心으로 부터 각 1cm씩 區分하고 6個所의 區劃의 面積중에 있는 集落數를 計測하여 1cm²의 平均集落數를 求하고 이에 平板全面積을 곱하여 算出한다.

② 1cm²의 集落數가 10을 넘을 때에는 ①의 경우의 4區劃에 따라 計測하고 이하 ①과 같이 算出한다.

(3) 大腸菌群試驗法

清涼飲料水의 나. 試驗方法의 (2) 大腸菌群試驗法 ② 試驗에 따라 試驗한다. 다만, 試料 50ml를 取하여 바로 醱酵管에 넣는다.

6. 食 醋

食醋라 함은 穀類·알코올性飲料·果實類 등을 原料로 하여 釀造한 釀造食醋와 氷醋酸 또는 醋酸을 主原料로 하여 만든 合成食醋를 말한다.

(가) 規 格

- (1) 比重: 1,000 이상이어야 한다.
- (2) 總 酸: 醋酸으로서 4~5%이어야 한다.
- (3) 揮發酸: 醋酸으로서 4%^{1.1}이어야 한다.
- (4) 不揮發酸: 젓酸으로서 0.03% 이상이어야 한다.

合成食醋인 경우에는 醋酸·枸橼酸·琥珀酸·酒石酸·글루콘酸중에서 1種 이상이 含有되어야 한다.

(5) 호름알데히드: 다음의 試驗에 適合하여야 한다.

(6) 遊離鐵酸: 檢出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試驗法

(1) 比重

食品添加物の 製造·加工·使用에 관한 基準과 그 成分의 規格에 관한 規程중의 4. 一般試驗法 (5) 比重測定法에 따라 測定한다.

(2) 總 酸

試料 10ml에 끓여서 식힌 물을 加하여 試料의 色이 淡色으로 될 때까지 稀釋한 다음 페놀푸탈레인試液 (1g을 알코올 100ml에 녹인다)을 指示藥으로 하여 0.1N 水酸化나트륨液으로 滴定한다.

0.1N 水酸化나트륨 1ml=0.006g Acetic Acid

(3) 揮發酸

$$\text{揮發酸} = \text{總酸} - \text{不揮發酸} \times \frac{0.006}{0.009}$$

(4) 不揮發酸

200ml의 磁製蒸發접시에 試料 16ml를 正確히 넣고 거의 蒸發乾固 시킨후 다시 蒸溜水 5~10ml를 加하여 蒸發시킨다. 이 操作을 적어도 5회 되풀이한 다음 끓여서 식힌 물 약 200ml를 加하고 페놀푸탈레인試液을 指示藥으로 하여 0.1N 水酸化나트륨液으로 滴定한다.

0.1N 水酸化나트륨 1ml=0.009g Lactic Acid

(5) 호름알데히드

크로포트로프酸 0.1g에 本品 1ml를 加하고 이에 黃酸 5ml를 加하여 水浴중에서 30分間 加熱한후 식히고 물을 加하여 250ml로 하였을 때에 이液의 色은 따로 試料대신 호름알데히드 標準溶液(호루말린 37%相當) 2.7g에 물을 加하여 1,000ml로 하고 그 10ml에 물을 加하여 1,000ml로 한다. 이 液 1ml는 HcHo 0.01mg을 含有한다. 쓸 때에 반는다. 1ml를 써서 試料와 같이 操作하여 만든 液의 色보다 淺해서는 아니된다.

다.

(6) 遊離鐵酸

試料 約 20ml에 메칠바이오렐溶液(0.1g을 물 100ml에 녹인다) 數滴을 加할때 遊離鐵酸이 含有되어 있으면 그 多少에 따라 綠~藍色을 나타낸다. 試料가 淺하게 着色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活性炭으로 脫色하여 試驗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훈 령

◎水産廳訓令第62號

韓日漁業協定에 따른 提携巡視및 視察乘船公務員服務規程을 다음과 같이 制定한다.

1968年 7月30日

水産廳長 金在植 團

다 음

韓日漁業協定에 따른 提携巡視및 視察乘船公務員服務規程

第1條 (目的) 이 令은 韓日漁業協定에 따른 提携巡視 및 視察乘船遂行 水産廳所屬公務員의 勤務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提携巡視遂行任務) 提携巡視 公務員의 遂行任務(日本國에서 要請한 視察乘船의 경우를 包含한다)는 다음과 같다.

1. 韓日間에 合意된 共同規制 水域巡視
2. 暫定的 漁業規制 措置에 관한 違反事項 團束
3. 漁船 및 指導船의 動態把握과 情報蒐集
4. 操業船의 海上事故에 대한 措置
5. 기타 提携巡視에 따른 필요한 事項의 처리

第3條 (提携巡視에 따른 報告) ①提携巡視에 따른 報告事項은 即報와 歸廳後 報告로 한다.

②即報(無電)는 다음과 같다.

1. 協定違反漁船의 發生 및 同措置事項
2. 漁船의 海上事故發生 및 同措置事項
3. 提携巡視計劃의 變更
4. 正午位置報告
5. 漁船 및 監視船의 動態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事項

③歸廳後 報告(書面)는 提携巡視任務 終了後 5

日 이내에 遂行狀況報告書에 다음 書類를 첨부 提出하여야 한다.

1. 日誌綴(別紙書式 1 號)
2. 航跡圖(總航程, 總運航時間표시)
3. 操業狀況 現認一覽表(別紙書式 2 號)

第 4 條 (提携巡視時의 通信方法) 提携巡視公務員의 通信方法은 다음과 같다.

1. 兩國船舶局의 無線使用方法是 別途 韓日漁業協定 合意議事錄 第 3 項을 위한 諒解事項의 附屬書 1 (通信方法)에 의하여 通信한다.
2. 兩國 監視船은 서로 合意하여 午前 8 時에 그날의 침로, 位置 및 速力등을 交信한다.

第 5 條 (視察乘船時의 遂行任務) 視察乘船公務員의 遂行任務는 다음과 같다.

1. 韓日間에 合議된 共同規制 水域巡視
2. 日本國 團東船 巡視狀況 確認
3. 暫定的 漁業規制措置에 대한 團東狀況確認
4. 漁船 및 監視船의 動態把握과 情報의 蒐集
5. 操業船의 海上事故에 對한 措置事項確認
6. 기타 韓日漁業協定에 관련된 措置事項確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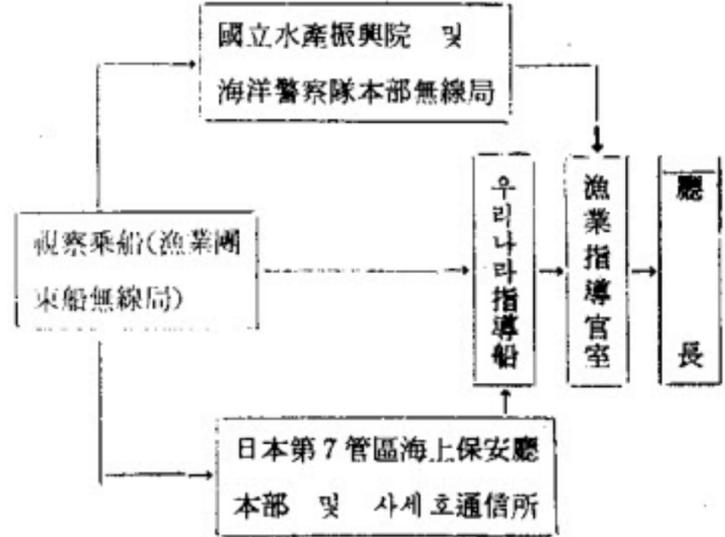
第 6 條 (視察乘船時의 報告) ①視察乘船에 따른 報告事項은 即報와 歸廳後 報告로 한다.

②即報(無電)는 다음과 같다.

1. 韓日兩國漁船間의 海上事故
2. 視察乘船計劃의 變更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事項

③歸廳後報告(書面)는 第 3 條第 3 項의 規定에 準한다.

第 7 條 (視察乘船時의 通信方法) ①送信依頼書는 英語 또는 國際慣例에 의거 作成하여 船長에게 提出하되 그 交信節次는 다음과 같다.



②前項의 送信依頼書에 대하여 送信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內容을 說明하여 주어야 한다.

第 8 條 (乘船公務員의 一般守則)

1. 服裝에 留意하여 品位를 추락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寢室이외에는 內衣만의 着用을 禁한다.
3. 業務遂行上 필요이외의 私談은 可及的 삼가하도록 한다.
4. 과격한 言辭나 行動을 하여서는 않된다.
5. 國家機密에 속하는 事項은 一切 言及을 하여서는 않된다.
6. 日常用品은 充分히 準備를 하여 相對國 船舶職員의 物品을 借用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相對國 船舶職員으로부터 學術書籍이외의 書籍等を 借用하여 閱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日常生活面에서 時間觀念이 투철하여야 한다.
9. 기타 大韓民國의 公務員으로서의 品位保持 上 필요한 諸般事項에 恒時留意하여야 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別紙 書式 1 號]

提携巡視日誌

日 字	船 名		復 命 者
	韓國 船	日本國 船	
船 位		通 信 事 項	
時刻	船 位	航 程	時刻 受發信
	北 緯 東 經		
		主 要 交 信 內 容	

違反漁船	時 刻	船 名	位 置	違 反 事 項	措 置 事 項	
漁船의 動態	時 刻	海 區	漁業別	隻 數 韓 國 日 本	漁 獲 事 項	備 考

特記事項(監視船舶 포함)

[別紙 書式2號]

操業狀況現認一覽表 ()

月日	時刻	推 實 의 別	漁 船 位 置	操 航 의 別	國 籍	漁 業 類	船 名	特 徵	備 考

◎原子力廳訓令第17號

放射線農學研究所放射線安全管理規程을 다음과 같이 制定한다.

1968年 7月27日

原子力廳長 成 佐 慶 團

다 음

放射線農學研究所放射線安全管理規程

第1條 (目的) 이 規程은 放射線農學研究所 (以下 研究所라 한다)에서 放射線 및 放射性 同位元素를(以下放射線等이라 한다) 使用함에 있어서 放射線에 依한 障害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하여 放射線等の 安全管理를 遂行함을 目的으

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規程에서 使用되는 用語에 關하여는 다음의 定義에 依한다.

1. 放射線이라 함은 放射性同位元素等の 管理 및 그에 依한 放射線障害防禦令(以下 令이라 한다) 第2條第3項에 規定한 放射線을 말한다.
2. 放射性同位元素라 함은 令 第2條第1項에 規定한 放射性同位元素를 말한다. 14
3. 放射線作業從事者(以下 從事者라 한다)라 함은 令 第2條第6項에 規定한 者를 말한다.
4. 放射線區域 隨時出入者라 함은 令 第2條第

7 項에 規定한 者를 말한다.

5. 緊急作業從事者라 함은 令 第3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緊急作業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6. 放射線 施設이라 함은 放射線育種場 및 放射線 發生裝置나 放射性同位元素를 使用, 貯藏, 分配 또는 汚染檢査를 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7. 放射線 事故라 함은 不意의 事故로 因하여 放射線等에 依하여 最大許容量 以上の 線量에 被曝되었거나 最大 許容 濃度以上の 空氣 또는 물을 吸入 또는 攝取함으로써 人體 및 物體에 障害를 미치는 경우 또는 放射線等을 盜難당하였거나 放射線 施設에 火災가 發生하거나 戰爭, 暴動 또는 天災地變으로 同施設이 破壞되는 경우等を 말한다.

第 3 條 (放射線安全管理官) ①放射線安全管理에 關한 業務를 擔當하게 하기 위하여 研究所에 放射線安全管理官(以下 安全管理官이라 한다)을 둔다. ②安全管理官은 研究所 所屬公務員中에서 放射線 安全管理 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를 放射線農學研究所長(以下 所長이라 한다)이 任命한다.

第 4 條 (安全管理官의 職務) ①安全管理官은 다음 各號에 揭기한 事項을 遂行한다.

1. 放射線區域의 設定
2. 從事者, 放射線區域 隨時 出入者 및 緊急作業 從事者의 指定
3. 前號에 指定한 者들에 對한 個人 放射線 被曝線量의 測定
4. 放射線 區域內의 放射線量率(以下線量率이라 한다)의 測定 및 汚染度의 檢査 및 空氣 또는 水中의 放射線 濃度의 測定
5. 其他 放射線 安全管理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②安全管理官은 前項第2號에 規定한 者들에 對하여 前項第3號의 測定에 따라 放射線을 放出하는 同位元素의 數量등을 定하는 規程(以下 數量規程이라 한다) 第4條에 規定한 最大許容 被曝線量을 超過하였거나 未達하였음을 確認하였을 때에는 前項第1號의 設定의 變更, 第2號의 指定의 取消 또는 變更을 할 수 있다.

③安全管理官은 本條第1項第4號의 測定 및 檢

査에 따라 數量規程 第9條의 最大許容 濃度 및 同規程 第13條의 最大許容表面汚染度를 超過하거나 未達하였음을 確認하였을 때에는 本條 第1項第1號의 設定의 變更을 할 수 있다.

④安全管理官은 所長에게 放射線 施設의 設計 및 建設에 對하여 放射線 安全管理上의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 5 條 (放射線作業從事者의 守則)

1. 從事者는 放射線 安全에 關한 安全管理官의 指示에 따라야 한다.

2. 從事者가 放射性同位元素를 使用 또는 放射性同位元素에 依하여 汚染된 物體를 廢棄하고자 할 때에는 別紙書式第1號에 따라 安全管理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3. 從事者가 放射性同位元素를 取得, 貯藏 및 搬出하고자 할 때에는 別紙書式第2號에 따라 安全管理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6 條 (各種標識) 令 第16條乃至 第19條, 第22條 및 第23條에 規定한 各種 標識는 數量 規程 第23條에 定한 바에 依하여 實施되어야 한다.

第 7 條 (放射線事故等에 對한 措置) ①從事者 및 出入者는 放射線事故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安全管理官에게 報告하고 그 指示를 받아야 한다.

②安全管理官은 放射線事故를 發見하였거나 事故發生을 報告받았을 때에는 即時 所長에게 報告하는 한편 令 第33條第1項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所長은 放射線事故等으로 因하여 從事者가 放射線에 對하여 超過 被曝되었음을 確認하였을 때에는 令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 8 條 (教育) 安全管理官은 從事者에 對하여 放射線安全管理에 關한 教育을 定期的으로 實施하여야 한다.

第 9 條 (報告) ①安全管理官은 所屬室長을 經由 每月 放射線等의 使用, 廢棄, 入手, 貯藏, 搬出等에 關한 狀況을 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安全管理官은 所屬室長을 經由 放射線區域內의 이 規程 第4條第1項 第3號 및 第4號의 測定結果를 每月 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③安全管理官은 前項의 測定結果에 關하여 그 措置를 所長에게 建議할 수 있다.

附 則
①이 規程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規程에 明示되어 있지 않은 細部 安全管理指針은 따로 所長이 定하여 施行한다.

[別紙 書式第 1 號]

放射線 또는 放射性物質(使用, 廢棄)承認申請書

放射線安全管理官 貴下

西紀 年 月 日

所屬室長

職名 姓名 ㉞

取扱責任者

職名 姓名 ㉞

아래와 같이 放射線 또는 放射性物質을(使用, 廢棄)하고자 하오니 承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期間	西紀 年 月 日부터	西紀 年 月 日까지	備 考
2. 場所(建物)	號	研究室	
3. 放射線源(物質)의 使用內容(詳細히)			
㉞. 放射線源(物質)의 種類, 形態量, 使用時間			
㉟. 使用目的			
㊱. 取扱者人員	職名	姓名	

[別紙 書式第 2 號]

放射性物質等の(取得, 貯藏, 搬出)承認申請書

放射線安全管理官 貴下

申請者:

西紀 年 月 日

所屬

職位 姓名 ㉞

아래와 같이 放射性物質을(取得, 貯藏, 搬出)하고자 하오니 承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放射性物質(元素)名	化學式 및 形態	量 ci	容器 또는 保管狀態	日 時	製造會社 또는 入手處名	使用室 職位, 責任者 姓名	備 考

고 시

◎건설부고시제453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것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68년 7월 26일

건설부장관

16

다 음

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 종류	점 용 면 적	목 적	공작물 개요	점 용 기 간	허가받은자의 주소 성명
1968. 7. 26.	부산시영도구대 평동 2가 4번지 지선	해면	179.4평	조선용선가대 설치	조선용선가대	허가일로부터 2개년간으로함	부산시 영도구대평동 2가 4번지 철성해양기업사 대표 공석용

◎건설부고시제454호

전라남도 광주~송정간 고속화 도로 건설사업의 집행청을 도시계획법 제 5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3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전라남도청·광주시청 및 광산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1968년 7월 27일

건설부장관

다 음

- 1. 사업명 : 광주~송정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 2. 사업집행청 : 전라남도 지사
- 3. 시설조사

등급	유별	번호	폭	연장	기점	종점
광로	2	1	40m	5,981m	상무동시계	송정역전광장
"	"	"	40m	3,200m	제19호광장	상무동시계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생략)

◎건설부고시제455호

전라남도 송정~광주 간의 다음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준용을 인가하였

다 음

- 1. 사업명 : 광주~송정간 고속화 도로 건설사업
- 가. 시설조사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준용도로	광로	2		35m	5,981m	상무동시계	송정역전광장	
도시계획도로	광로	2	1	35m	3,200m	제19호광장	상무동시계	
계					9,181m	제19호광장	송정역전광장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생략)

- 2. 사업집행자 : 전라남도지사
- 3.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착수 : 1968. 8. 1 준공 : 1969. 6. 30

◎건설부고시제457호

공유수면의 점용 및 공작물설치 권리 의무 양도 양

다 음

양도양수 년월일	점용장소	수면의 종류	면적	목적	양수인주소성명	양도인주소성명
1968년 7월 23일	전북군삼산읍압동292의3번지지선	해면	19.3평	송유관해상인도용설치	서울특별시중구율지로 2가18의 2 우봉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구	전북군삼산읍압동73동서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석창

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전라남도청과 광주시청 및 광산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1968년 7월 27일

건설부장관

다 음

- 1. 도시계획법 준용시설조사

등급	유별	폭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광로	2	40m	5,981m	상무동시계	송정역전광장	고속화도로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생략)

◎건설부고시제456호

전라남도 광주~송정간 다음의 고속화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5조 및 동법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였기 동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전라남도청·광주시청 및 광산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1968년 7월 27일

건설부장관

수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68년 7월 29일

건설부장관

◎건설부고시제462호

공유수면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68년 7월30일

건설부장관

다 음						
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 종류	점 용 면 적	점 용 목 지	점 용 기 간	허가받은자의주소성명
1968. 7. 25	삼천포시서금동 101의13번지 지선	해면	300평	유류하양장	1968년 7월25일부터 2년간	삼천포시선구동25의11번지 이종창

◎건설부고시제463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착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68년 7월31일

건설부장관

다 음						
허가년월일	매 립 장 소	수면 종류	면 적	연 장 을 허 가 한 착 수 기 간	연 장 후 허 가 한 착 수 기 간	면허를받은자의주소성명
1968. 7. 25	부산시부산진구감만동 498의2번지 지선	해면	16,528평	1968년 9월30일	1968년 9월30일	부산시부산진구범일동1284 김지태

◎건설부고시제464호

공유수면 점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68년 7월31일

건설부장관

다 음						
연장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의 종류	면 적	목 적	연장허가기간	허가받은자주소성명
1968. 7. 26	전북군산시금암동274의 67, 273의13번지 지선	해 면	1,247평	원목저목장	1968. 7. 7~ 1970. 7. 6	전북 군산시금암동274 신흥목재주식회사 대표이사 오민영

◎건설부고시제465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68년 7월31일

건설부장관

다 음						
연장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의 종류	면 적	목 적	연 장 허 가 기 간	허가받은자주소성명
1968. 7. 26	충남서천군장항읍원수동909의3번지 지선	해 면	100평	선가대 설치	1968. 4. 7~ 1970. 4. 6	충남서천군장항읍원수동909의3번지 조병철

◎건설부고시제466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68년 7월31일

건설부장관

18

다 음						
연장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의 종류	면 적	목 적	연 장 허 가 기 간	허가받은자주소성명
1968. 7. 27	전남여수시중앙동282번지 지선	해 면	16.3평	해빙탑설치	1968. 6. 11~ 1970. 6. 10	전남여수시남산동 4 번지 여수어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의근

공 고

◎교통부공고제2, 166호

1967년 12월 18일 제 323회 임시해기원 국가시험 합격자 공고중 아래의 자는 불합격 되었으나 사무착오로 합격 공고되었으니 불합격으로 정정 공고한다.

1968년 7월 29일

교통부장관 강 서 룡
송시호 내연울중 1등기관사

◎교통부공고제2, 168호

제주지방 해운국 관내 추자각막여등표가 다음과 같이 소등되었기 공고한다.

1968년 7월 30일

교통부장관 강 서 룡

표 지 명	위 치	소등년월일	비 고
추자각막여 등표	33°57.6' 126°20.1'	1968. 7. 26	등명기 고장

◎보건사회부공고제66호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당부에 등록된 다음 단체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이에 공고한다.

1968년 7월 15일

보건사회부장관

- 다 음
1. 켈실바니아 윗치타워 성서책자협회
가. 등록번호: 제 77번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5-19
다. 사업종류: 사회, 교육사업
라. 본 국: 미국
마. 취소사유: 자진취소
 2. 성바오로 수도회
가. 등록번호: 제 71번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산 31의 6
다. 사업종류: 교육사업
라. 본 국: 이탈리아
마. 취소사유: 자진취소
 3. 대한성공회
가. 등록번호: 제 4번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 3

- 다. 사업종류: 보건, 사회사업
라. 본 국: 영국
마. 취소사유: 대영성서공회와의 통합

광 고

○공 시 최 고

68. 카. 714

목포시 북교동 88번지

신청인 허 종 혁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68년 11월 18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포가 되는 수가 있다.

1968년 7월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사 최 용 관

證書의重要한趣旨

1. 種類 當座手票 1枚
1. 番 號 238789
1. 額 面 金522,500원整
1. 支 給 人 中小企業銀行木浦支店
1. 支 給 地 및 發 行 地 木浦市
1. 發 行 年 月 日 1968年 8月 13日
1. 發 行 人 허종혁
1. 最後所持人 申請人

68. 카. 2, 090

대구시 북구 태평로 5가 112

신청인 박 영 규
(朴 瑛 圭)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68년 10월 22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포가 되는 수가 있다.

1968년 6월 15일

대구지방법원
판 사 김 영 주

證書의重要한趣旨

1. 種類 約束어음 13枚 및 當座手票 1枚
 1. 番 號 · 額 面 및 發 行 年 月 日
- | 番 號 | 額 面 | 發 行 年 月 日 |
|-------|-------------|-------------|
| F 344 | 金 90,000원整 | 1968年 5月 2日 |
| F 316 | 金 200,000원整 | " |
| F 338 | 金 250,000원整 | 19 |
| 다 19 | 金 133,000원整 | " |
| 다 54 | 金 81,500원整 | " |

다43 金140,000원整 1968年5月10日
 다50 金 80,000원整 "
 다52 金100,000원整 "
 다57 金 60,000원整 "
 다77 金100,000원整 "
 다72 金100,000원整 "
 다74 金100,000원整 1968年5月15日
 다70 金120,000원整 "

(以上 約束어음 13枚)

287706 金100,000원整 1968年5月10日

(以上 當座手票 1枚)

- 1. 發行人 朴英圭
- 1. 發行地 達城郡農業協同組合
- 1. 受取人 所持人
- 1. 發行地 大邱市

68. 카. 2, 102

영천군 고경면 등도동 398

신청인 정진홍 (鄭 鎭 洪)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68년10월16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68년 6월11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영주

證書의重要한趣旨

- 1. 種類 自己앞手票
- 1. 番號 No B784087
- 1. 額面 金200,000원整
- 1. 支給年月日 1968年6月7日
- 1. 發行地 大邱市
- 1. 支給人 및 發行人 株式會社 서울銀行大邱支店
- 1. 最後所持人 申請人

68. 카. 2, 184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내 4지구 10열서

신청인 최재환 (崔 載 煥)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68년10월1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68년 6월15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영주

證書의重要한趣旨

- 1. 種類 約束어음 3枚

1. 番號·額面 및 支給年月日

番號	額面	支給年月日
A-52	金 90,000원整	1968年6月30日
A-62	金100,000원整	1968年6月15日
A-63	金 50,000원整	1968年6月25日

1. 支給人 第一銀行大邱西支店

1. 發行人 玄照子

68. 카. 2, 230

대구시 남구 남산동 104

신청인 조능수 (趙 能 秀)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68년10월16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68년 6월19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영주

證書의重要한趣旨

- 1. 種類 自己앞手票
- 1. 番號 No 74113
- 1. 額面 金50,000원整
- 1. 發行人 株式會社 第一銀行大邱支店
- 1. 發行年月日 1968年6月12日
- 1. 支給人 株式會社 第一銀行大邱支店

68. 카. 2, 442

대구시 북구 칠성동1가 176의16

신청인 채병길 (蔡 炳 吉)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68년10월30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68년 7월2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영주

證書의重要한趣旨

- 1. 種類 手票 4枚, 및 約束어음 1枚
 - 1. 番號 및 額面
- | 番號 | 額面 |
|--------|------------|
| 025705 | 金 50,000원整 |
| 025704 | 金 50,000원整 |
| 025703 | 金 50,000원整 |
| 025716 | 金200,000원整 |

20

(以上 手票 4枚)

金120,000원整

(以上 約束어음 1枚)

- 1. 發行年月日 1968年6月30日
- 1. 支給人 株式會社 商業銀行七星洞支店
- 1. 發行人 蔡炳吉
- 1. 最後所持人 申請人

68. 카. 2, 482

대구시 중구 대신동 115

신청인 최 순 열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68년10월30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68년 7월 4일

대구지방법원

관 사 김 영 주

證書의重要한趣旨

- 1. 種 類 當座手票
- 1. 番 號 당라 102506號
- 1. 額 面 金300,000원整
- 1. 發行人 崔順烈
- 1. 支給年月日 1968年7月5日
- 1. 支給人 서울銀行大邱西支店
- 1. 受取人 所持人
- 1. 最後所持人 申請人

68. 카. 2, 560

대구시 남구 남산동 698

신청인 현 채 윤 (玄 采 潤)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68년10월30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68년 7월 8일

대구지방법원

관 사 김 영 주

證書의重要한趣旨

- 1. 種 類 當座手票
- 1. 番 號 398818
- 1. 額 面 金300,000원整
- 1. 支給地 및 發行地 大邱市
- 1. 支給人 株式會社 第一銀行大邱支店
- 1. 發行年月日 1968年7月9日
- 1. 發行人 玄采潤
- 1. 受取人 所持人

68. 카. 2, 568

대구시 서구 내당동 1126

신청인 김 손 열 (金 孫 悅)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68년10월30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68년 7월 8일

대구지방법원

관 사 김 영 주

證書의重要한趣旨

- 1. 種 類 個人當座手票
- 1. 番 號 契K 308626
- 1. 額 面 金1,200,000원整
- 1. 發行年月日 1968年7月14日
- 1. 發行人 金孫悅
- 1. 支給人 達城郡農協大邱支所

○실종선고를하기위한공시최고

68. 누. 79

본 적 및 주 소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600

청구인 이 칠 규 (李 七 珪)

1911년 6월29일생

본 적 및 최후주소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600

사건본인(부재자) 이 인 구 (李 仁 求)

1947년 1월14일생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실종선고 청구가 있으므로 당 법원은 다음과 같이 최고한다.

- 1. 1969년 2월10일 10시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것.
-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본 법원에 신고할것.
- 1. 위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신고를 받는다.

1968년 7월25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심판관 허 진 명